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6232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623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단3061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변론 종결 2024. 6. 20.

판결 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단3061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82,180,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2,180,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82,976,9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2,976,9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분과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3. 9. 5.경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3. 9. 14.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소송 진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 28.경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보험기간 2021. 10. 1.부터 2023.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98,000,000원으로 정하여 B의 E에 대한 사내 하도급공사 노임 지급 보증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2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12. 23. E에게 191,982,608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22. 6. 29.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체결일자 매매대금(잔금)지급일인 2022. 6. 2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아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대산테크 유한회사,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1. 5. 27. 채무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108,900,000원으로 변경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2022. 6.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191,982,608원을 지급함으로써, B와 C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약정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2. 12. 2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E에 191,982,608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1. 9. 28.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반하여, F은행에 대하여 약 40,000,000원의 신용대출금 채무, 97,000,000원의 대출금채무, 96,400,000원의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매대금이 염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80,000,000원 중 97,819,714원이 C의 F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70,000,000원은 B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매매대금 전부를 C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C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H의 친언니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H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2022. 6. 24. 자 30,133,795원, 피고의 J조합 예치금 2022. 6. 28. 자 40,000,000원, K으로부터 지급받은 2022. 6. 29. 자 60,000,000원, 출처를 알 수 없는 2022. 6. 29.자 현금 30,000,000원, H으로부터 지급받은 2022. 6. 29.자 20,000,000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I은 피고의 아들이고, H과 K은 피고의 동생들이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C의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그 출처를 알 수 없는바, 피고가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23. 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소명 협조를 요청받고, 아래와 같이 C와의 관계, 매매대금 출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당초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금(예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여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C에게 즉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23. 11. 17. 자 준비서면).

1. C와의 관계 - 타인

2. 경위 - 집값 상승 기대로 구입했는데 집값 하락으로 고민

6. 대금지급위한 자금 출처 - 소유하고 있는 자금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K으로부터 제공된 부분과 관련하여, 'K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2024. 6. 10. 자 준비서면)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K으로부터 빌린 돈'(2024. 6. 21. 자 참고서면)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는 K와의 관계를 '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H으로부터 제공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H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2022. 1. 14.자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을 제9호증).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당일 위 20,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가 C에게 위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인 2022. 6. 29. 매매대금 전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나눗 없이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7,819,714원과 나머지 82,328,286원을 C가 아닌 제3자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8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7,819,714원(= 거래원금

97,023,091원 + 정상이자 19,829원 + 수수료 776,7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8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7,819,714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82,180,286원(= 180,000,000원 - 97,819,714원)이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82,180,286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82,180,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2,180,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양소영

판사김혜림

별지